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 등의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예방접종의 도입에 대한 평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감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해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국립보건연구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30.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명(5급 1명, 6급 1명)”을 “1명(5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다.

별표 4 중 총계 “478”을 “4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7”을 “4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7”을 “46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25”를 “9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25”를 “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15”를 “910”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3. 제3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1
7급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한시정원) ① · ② 삭제 ③ (생략) ④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u>2명(5급 1명, 6급 1명)</u> 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u><신설></u>	제38조(한시정원)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23년 12월 31일</u> ----- ----- ----- <u>1</u> ----- <u>명(5급 1명)</u> ----- ----- -----. ----- ----- -----. <u>⑤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다.</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8</u>	<u>480</u>	+2
•	•	•	
•	•	•	
일반직 계	<u>477</u>	<u>479</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67</u>	<u>469</u>	+2
•	•	•	

[별표 5]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25</u>	<u>920</u>	-5
일반직 계	<u>925</u>	<u>920</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15</u>	<u>910</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1